

Issue No.  
2020-6 June  
2020

# 국제 인권 동향

## Human Rights Worldwide



### 미국 연방대법원 소식

####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념비적 판결: 성소수자 근로자 차별은 위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15일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6대 3으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성적지향이나 성적체성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민법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다. 2015년 동성결혼 합헌판결에 이어 성소수자 인권운동 역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두 개의 비슷한 사건을 묶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었다. 두 개의 사건은 자신의 성적 지향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된 동성애자 남성들이 제기한 것이다. 조지아주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제럴드 보스톡(Gerald Bostock)은 동성애자 소프트볼클럽에 가입한 후, 학대당하고 소외된 아동들을 돌보는 정부프로젝트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은 스카이다이빙 강사인 도널드 자다(Donald Zarda)가 자신과 단 둘이 다이빙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여성 고객에게 자신은 “100퍼센트 게이”라고 말한 이후 해고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적체성 관련 쟁점은 장례식장 직원으로 일했던 에이미 스티븐스(Aimee Stepehns)가 2013년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밝히고 여성의 복장을 하고 출근하면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이는 민권법 제7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의 의미 해석이었다. 1964년 제정된 미국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7조는 인종, 종교, 출신국가, 생물학적 성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인 “생물학적 성(sex)으로 인한 차별”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근로자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판결을 내려야 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닐 고서치(Neil M. Gorsuch) 대법관은 “어떤 개인을 동성애자이거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하면서 생물학적 성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단순히 동성애자이거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민권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적체성으로 인해 차별받는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고용주는 차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할 수 있다.

새뮤얼 얼리토(Samuel A. Alito Jr.) 대법관은 클라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수의 대법관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법안 제정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얼리토 대법관은 말했다. 1964년 민권법 제정 당시 성차별은 여성이나 남성에게 대한 편견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성적 지향이나 성적체성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얼리토 대법관은 나아가 민권법 제7조 위반 판결은 화장실, 탈의실 사용부터 의료보건,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좁은 의미를 갖는다고 답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관련 문제가 민권법 제7조에 따른 차별인지, 혹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는 차후 판결을 통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http://www.nytimes.com/2020/06/15/us/gay-transgender-workers-supreme-court.html>

<http://www.huffingtonpost.kr/entry/us-supreme-court-sexual-orientation-discrimination>

## 유엔총회 소식

### 유엔 총회, 국제 교육보호의 날 지정하는 결의안 채택

2020년 5월 28일 제74차 유엔 총회 참가국들은 매해 9월 9일을 국제 교육보호의 날(International Day to Protect Education from Attack)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모든 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인도주의적 비상상황에서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공격을 가하거나 학교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인도주의적 비상상황에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장기적 발전 목표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국제법에 따른 교육시설의 보호 및 존중의 필요를 다시 언급했다.

나아가 유엔총회는 회원국, 유엔, 민간부문, 시민사회가 국제 교육보호의 날을 적절한 방식으로 기념하고 매해 기념행사에서 유네스코나 유니세프가 촉진자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티자니 무함마드 반데 유엔 총회 의장은 “분쟁상황에 처한 아동들에게 교육은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된다”고 말했다. 매해 교육은 청소년의 분쟁 참여율을 20퍼센트 감소시킨다. 반데 의장은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상황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국제 교육보호의 날은 35개 분쟁 국가에 거주하는 7천 5백만 3~18세 아동들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모든 학습자들을 위한 포용적이고 동등한 교육을 제공할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 학생, 교직원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교육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분쟁상황에서 교육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도주의적 비상상황에서 안전하고 보호를 제공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면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http://www.un.org/press/en/2020/ga12246.doc.htm>  
<http://en.unesco.org/news/new-day-focuses-protecting-education-attack>

## 유엔 소식 (노인인권)

###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의 세계 노인 인식 제고의 날 성명서

2020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새로 임명한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클라우디아 말러(Claudia Mahler)는 각 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노인방임을 포함, 노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독립전문가는 6월 15일 세계 노인인식 제고의 날을 맞아 다음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노인들이 더욱 주목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노인들의 목소리, 의견, 우려사항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정, 병원,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에서 노인들에 관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글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은 절망적이다. 언어폭력은 분명 노인들이 고통에 따른 차별(연령주의)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언어폭력과 경멸적 사이버폭력은 노인인권에 심대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이면서 때로는 근거가 없는 의견은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게시글이나 언론기사에 달린 “베이비붐 세대를 죽이는 병(boomer remover)” 해시태그는 노인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거나 자신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킴으로써 젊은 세대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명백히 노인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것이다. 연령주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정책은 용납될 수 없고 독립전문가는 각 국이 연령주의적 방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언어폭력은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학대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셜미디어는 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고 최소한 노인 인권을 침해하는 메시지를 널리 확산하여 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Hate-speech-threshold-test.aspx>

※노인학대 예방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http://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573>

## 인권 NGO 소식

### 휴먼라이츠워치: 미국 내 감염증 관련 격차는 구조적 인종주의의 증거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의 인종 격차와 전국적 대규모 시위를 야기하는 인권 침해와 구조적 인종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6월 10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미국 내 유색인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판정을 받거나 사망할 확률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유색인종 인권 보호에 실패했고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 유색인종의 휴먼라이츠워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았다.

- 인종차별적인 경찰활동 및 감금으로 인해 유색인종이 감금상태에서 더 큰 감염의 위험에 노출됨
- 미국 내 유색인종 커뮤니티는 감염 위험 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자원의 이용에 제약이 있음
- 인종분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미국 내에서 충분히 보장된 적이 없음. 연구에 따르면 인종분리비율이 높을수록 건강검진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저임금의 “필수” 노동자들은 이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위험은 정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함으로 인해 더욱 악화됨
- 유색인종의 적정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이들이 과밀한 장소에 거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근로 중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전에도 흑인 여성들은 출산 중 사망률이 높았는데 감염병에 대응하면서 출산관련 지원을 제한하고 조기 퇴원을 권고하게 됨. 의료부문의 구조적 인종주의와 맞물려 흑인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함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재 미국 전역에 발생한 시위는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경찰단속과 뿌리깊은 인종차별을 근절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의회는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여 인종에 따른 감염병 피해의 격차와 시위를 야기한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hrw.org/news/2020/06/10/us-covid-19-disparities-reflect-structural-racism-abuses>

###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